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구성 요건 명확화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49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구성 요건 명확화(안 제10조)	3

I. 제안경위

이수진위원이 2025년 1월 15일 대표발의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3항).

Ⅲ. 검토의견

1.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구성 요건 명확화(안 제10조)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현행 고용정책심의회 위촉위원 중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② (생략)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③ ----- ----- ----- ----- ----- ----- -----.
<u>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u>	<u>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u>
<u><신설></u>	<u>1의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u>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성에 관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되, 위원은 ①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②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고 있음.

고용정책심의회 구성 관련 법 조문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조(고용정책심의회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안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촉위원 중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은 고용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대표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및 비정규직지원 관련기관에서 각 1명, 사업주대표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각 1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심의회를 운영 중임.

개정안은 현행법이 근로자대표와 사업주대표를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정부의 위원 위촉에 재량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는 산업별 연합단체(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¹⁾²⁾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들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경우 개별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에 비해 다양한 산업과 직역의 근로자·사용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 단체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위촉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법적 의의가 있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2) 현재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①한국노동조합총연맹, ②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③전국노동조합총연맹, ④대한민국노동조합총연맹, ⑤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⑥국민통합노동조합총연맹 등 6개임.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사업주대표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일부 단체에만 부여되며, 특히 근로자대표 추천권한을 ‘총연합 단체’로 한정하고 있는바 총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맹 노동조합 조합원이 전체 노동조합원의 17.5%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 추천권한을 법률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음.

< 2023년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 비교 >

구 분	인원수	비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160,162명	4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086,618명	39.7%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7,821명	0.3%
전국노동조합총연맹	1,441명	0.1%
국민통합노동조합총연맹	1,068명	0.0%
대한민국노동조합총연맹	511명	0.0%
미가맹	479,758명	17.5%
합 계	2,737,379명	100%

자료 : 고용노동부, 『2023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2024.12.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이 13.0%이고 전국단위 미가맹 노동조합 조합원(48만여명)이 전체 노동조합원의 17.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에 근로자 대표의 범위가 축소된다는 점, 현 규정에 따르더라도 개정안에 따른 사람을 근로자·사업주 대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다만, 성별, 연령, 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고용정책을 논의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대표의 참여 확대를 통해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35